

의안번호	제 29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4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인원수 변경(제11조제2항)
 - 20명 이내 → 15명 이내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변경(제11조제5항)
 -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,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·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
 - (당연직 위원) : 기업유치지원과장 →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제외
 - (간사) :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 → 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
- 판매장운영위원회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개최 조항 삭제(제13조제2항)
 - 매년 2월 소집 개최토록 한 정기회의 경우 개최 실익 및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 개최토록 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0명 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”를 “경제통상국장이 되고”로 하며, “도 본청의 기업유치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 하고”를 “관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업지원 담당 사무관”을 “관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10조 (생 략)</p> <p>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0명 이내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기업유치 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</u> 하고, -----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들 두며, 간사는 <u>기업지원 담당 사무관이</u> 된다.</p> <p>제12조 (생 략)</p> <p>제13(회의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 <p>제14조 ~ 제16조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5명 이내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판로지원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으로 하며,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들 두며, 간사는 <u>판로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</u> 된다.</p> <p>제1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 <p>제14조 ~ 제16조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
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기업유치 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외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